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06
----------	-----

제출연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집단마을”이란 건물(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m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나. 가축사육의 제한(안 제3조)

- 평창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절대제한지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 상대제한구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m지점과 200m 지점 사이의 지역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500m이내의 지역
 - 「의료법」 제3조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소, 젓소, 말, 돼지, 양, 사슴, 산양, 염소, 개는 각 5두 이하, 닭, 오리, 메추리는 각 20수 이하로 한다.

○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경우**

- 학교에서 학습·실험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 및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젓소, 말, 돼지, 양, 사슴, 산양, 염소, 개는 3두 이하, 닭, 오리, 메추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다. 지형도면의 변경(안 제6조)

-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하며,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 (2015년 당초예산, 25백만원)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1차 : '15. 04. 10 ~ 04. 29(20일간), 평창군 공고 제2015-395호
- 2차 : '15. 05. 15 ~ 06. 05(21일간), 평창군 공고 제2015-524호
- 입법예고결과 : 별첨

(2) 행정규제 심사결과 : 원안의결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평가결과 : 재검토 필요

- 조례안 제3조제4항에서 기존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에 관하여 설치제한과 설치허용을 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의 소지가 있음.

- 조례안 제3조제4항제4호에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도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행위 제한에 해당됨.

○ 검토결과 : 의견 반영 (조례안 제3조 4항 삭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④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중인 가축사육 시설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멸실 또는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
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
3. 해당부지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
4. 제3조제2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전체의 세대주 동의를 받아 기존 사육시설 면적의 20%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하는 경우.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염소·산양·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방목지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집단마을"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단,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주택은 제외한다.)
5.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고, 「농어촌 주택 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젓소, 말, 돼지, 양, 사슴, 산양, 염소, 개는 3두 이하, 닭과 오리, 메추리는 1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축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상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지형도면 변경)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가축 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건축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별표에 따라 새로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은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 중 「건축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3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 중인 자중 「건축법」 등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조치하여야 한다.

[별 표]

제한지역별 가축종별 사육허용 범위 (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제 한 지역별	해 당 지 역	사육허용범위				
		소 젓소 말	돼지	양, 사슴 산양 염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비고
절 대 제 한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 ○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0	0	0	0	
상 대 제 한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부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집단마을의 경계로부터 100m지점과 200m지점 사이의 지역 ○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500m이내의 지역 ○ 「의료법」 제3조의 병원급의료기관으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 	5	5	5	20	
※ 축산단지 또는 앞으로 지정되는 축산단지는 예외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제6조(지형도면 변경) ①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②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2015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 : 19,500천원)

4. 작성자

작성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연락처	(033) 330 -2340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 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 (1차)

제출자	조 항	제출의견	검토결과
한우협회 낙농협회 양돈협회	안 제2조 정 의	“집단마을”이란 외벽간 거리가 최대 25m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개정 ※ 입법예고문 : 50m이내, 5호	“일부 반영” - “50m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반영
		“주택”이란 건축법상의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하고 공동주택은 1가구로 개정	“미 반영” - 조례제정효과 미흡
	안 제3조 가축사육 의 제한	절대제한지역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중 집단마을경계로부터 25m이내 지역으로 개정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개정	
		상대제한구역은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25m지점과 100m지점으로 개정	
	가축사육허용범위는 소,젓소,말 돼지,양,사슴,산양,염소,개는 각 30두이하, 닭,오리,메추리는 각 30수이하로 개정	“미 반영” - 사육두수 상향조정 시 악취민원 유발 우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신축은 제한, 증축,개축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반영” - 과도한 규제로 민원 발생 우려 및 배출 시설 제한은 위법 소지	
	집단마을 전체 세대주 동의를 받은 경우 20%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증축하는 경우 “삭제”	“미 반영” - 변경된 지역여건 조기에 반영 필요	
	지형도면은 10년마다 재작성으로 개정		

제출자	조 항	제출의견	검토결과
고보영 진철호 김천용 김경아 오은정	-	관광목장은 소규모이고 비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분뇨처리시설 또한 넓은 방목지에 방목하여 별 다른 문제 없음.	- 기존 시설이고 축사가 없어, 해당사항 없음
대관령 아기동물 목장 (김춘기)	-	관광목장은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축산시설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축분도 자연정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함.	

□ 입법예고 결과 (2차)

제출자	조 항	제출의견	검토결과
전성용 김복단	안 제2조 (정 의)	“집단마을”이란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m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 규정 외에 주변지역 전체 주민들의 동의서 징구를 의무화할 것.	“미반영” - 상위법규 근거없음.
	안 제3조 (가축사육 의 제한)	절대제한지역을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중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1km로 확대 적용.	“미반영” - 과도한 규제로 축산업계 위축 및 업체 반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 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500m이내 지역(상대제한구역) ⇒ 1km 이내로 확대 지정.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강화된 조례를 제정해 주기 바람.	